

「KDS 41 19 00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2. 조사 및 계획

2.1 일반사항

－ 지반조사는 2.2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고, 보고서는 2.6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요구하거나 현장시험, 실내시험 또는 공학적 계산을 포함한 지반조사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자(토질 및 기초)가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의 “건설기술인 자격” 및 “지반조사”의 정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의 “건설기술인 인정 범위”,

엔지니어링진흥법 제2조 “엔지니어링활동”과 “엔지니어링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기술사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KDS 41 19 00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의 해당 전문분야는 “토목·지질”이고 전문기술자는 “지질 및 지반” 또는 “토질 및 기초”입니다.

그리고 개정안 2.1 일반사항의 “감독관이 요구하거나”의 규정은 특정 직무군의 해당하는 전문분야로 편향될 우려가 있으므로 객관적인 설계기준 수립을 위하여 현행 규정을 유지함이 타당하여 개정안의 “감독관이 요구하거나”의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개정안 2.1의 “감독관이 요구하거나” 문구의 삭제 및 “해당분야 전문기술자(토질 및 기초)”를 “해당분야(토질,지질) 전문기술자(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으로 수정하여 하 할 것입니다.